

복지후생규정

제정 2009.10. 1 규정 제24호

개정 2010. 1.12 규정 제47호

개정 2013.12.27 규정 제105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과 직원의 보건관리와 생활 안정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상임 임원, 일반직원, 전문직원 및 별정직원(이하 “임직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장 안전과 보건

제3조(안전 및 보건)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건강진단) 임직원에게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조(의료시설) 임직원의 건강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시행세칙으로 정한 의료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기관을

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가입) 임직원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혜자로 하는 임직원의 건강과 보전에 관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3장 복리후생

제7조(복리후생 기구 및 시설)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기구 및 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공사신용협동조합 또는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직장새마을금고
2. 상조회, 동호회
3. 구내식당, 구내이발소, 구내구판장, 구내휴게소
4. 수련원, 휴양소, 체육시설
5. 연구시설, 도서실, 공연장
6. 직장보육시설
7. 그 밖에 임직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기구 및 시설

② 제1항 각 호의 후생기구 및 시설의 설치,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르고, 관계법령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복리후생비 지급)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고, 그 지급기준,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은

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1. 삭제<2013.12.27>
2. 삭제<2013.12.27>
3. 삭제<2010.1.12>
4. 기념금품
5. 삭제<2010.1.12>
6. 삭제<2010.1.12>
7. 특근식대
8. 삭제<2010.1.12>
9. 삭제<2010.1.12>
10. 그 밖의 후생비

제9조(학자금 보조) 공사는 취학자녀를 둔 임직원에 대하여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주거안정지원) 임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택을 제공하거나 합숙소, 공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주택마련자금 지원) 무주택임직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통근차량 운행) 임직원의 출퇴근 편리를 위하여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.

제13조(그 밖의 시설) 임직원의 학문 및 학술의 보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장 피복

제14조(피복 대여) 임직원에게 업무수행 중 착용할 피복을 대여할 수 있으며, 피복 대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5장 체육

제15조(직장체육진흥) ①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법령 및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임직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·기구의 설치 및 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(2009.10.1)

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1.12)

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12.27)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